



기관이용안내서



소 망 요 양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자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자)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기간

- 1) 입소일부터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 2)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 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수가의 인상, 비급여 항목의 금액변동으로 인한 월 이용료의 변동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전체 공지 및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본인부담율의 변동으로 월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며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 장기요양등급인정기간이 만료되어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하며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①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 ④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⑤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침실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④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6.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1) 수급자에 관한 건강·병적상태 등의 건강관리 협조 및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용·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5) 수급자는 시설 생활 규칙을 이행할 의무
- 6)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7)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종사자 근무 체계

1.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2.1:1기준)		조리원	
법정 인력	현 원	법정 인력	현 원	법정 인력	현 원	법정 인력	현 원	법정 인력	현 원	법정 인력	현 원
1	1	1	1	1	1	1	1	8	10	1	1

2. 직종별 근무형태

직종	근무형태	근로시간	직종	근무형태	근로시간
시설장	주5일	08:00~18:25	요양보호사	교대근무 ≡주5일	주간 08:30~18:00 야간 18:30~익일07:30
사회복지사	주5일	07:40~18:40 08:30~18:00	조리원	주5일	08:30~18:00
간호사	주5일	08:30~18:00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2025년도 시설이용료 및 입소자비용부담금

◇ 시설급여 (1일)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90,450	83,910	79,24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		
	식재료비(1식)	1,800(1일5,400*30=162,000)		
	간식비(1회)	600(1일*30=18,000)		
	이/미용료등	0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감경	12%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화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본인일부부담금 납부방법 및 본인일부부담금 외 금액납부

1. 입소자는 월 본인일부부담금을 익월 초에 납부하며 시설장은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명세서를 발부한다.
2. 입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를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한다.
3. 입소자의 의료비 및 입소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직접 부담한다.

◇ 세부내역 (30일 기준)

<1등급 (90,450)>

구 분	본인일부부담금(일반) 20%대상자	금액(원)	본인일부부담금(감경) 12%대상자	금액(원)	본인일부부담금(감경) 8%대상자	금액(원)
요양보험	소 계	2,170,800		2,387,880		2,496,420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80%)	2,170,800	요양급여비용(88%)	2,387,880	요양급여비용(92%)	2,496,42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722,700		505,620		397,080
	요양급여비용(20%)	542,700	요양급여비용(12%)	325,620	요양급여비용(8%)	217,080
	식사재료비/간식비	180,000		180,000		180,000
	경관유동식은 별도					
	상급침실 이용료 (이용시 별도부담)					
	장기요양급여비용 계 (식사/간식 제외)	2,713,500		2,713,500		2,713,500

<2등급 (83,910)>

구 분	본인일부부담금(일반) 20%대상자	금액(원)	본인일부부담금(감경) 12%대상자	금액(원)	본인일부부담금(감경) 8%대상자	금액(원)
요양보험	소 계	2,013,840		2,215,230		2,315,920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80%)	2,013,840	요양급여비용(88%)	2,215,230	요양급여비용(92%)	2,315,92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683,460		482,070		381,380
	요양급여비용(20%)	503,460	요양급여비용(12%)	302,070	요양급여비용(8%)	201,380
	식사재료비/간식비	180,000		180,000		180,000
	상급침실 이용료 (이용시 별도부담)					
	장기요양급여비용 계 (식사/간식 제외)	2,517,300		2,517,300		2,517,300

<3등급/4등급/5등급 (79,240)>

구 분	본인일부부담금(일반) 20%대상자	금액(원)	본인일부부담금(감경) 12%대상자	금액(원)	본인일부부담금(감경) 8%대상자	금액(원)
요양보험	소 계	1,901,760		2,091,940		2,187,030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80%)	1,901,760	요양급여비용(88%)	2,091,940	요양급여비용(92%)	2,187,03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655,440		465,260		370,170
	요양급여비용(20%)	475,440	요양급여비용(12%)	285,260	요양급여비용(8%)	190,170
	식사재료비/간식비	180,000		180,000		180,000
	상급침실 이용료 (이용시 별도부담)					
	장기요양급여비용 계 (식사/간식 제외)	2,377,200		2,377,200		2,377,200

30일 기준 등급외자 본인부담금(입소+ 식대) : 2,377,200+ 180,000= 2,557,200원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식재료비	일반식	끼니당: 1,800원/간식비: 600원	1일 6,000원
	경관식	상황발생시 적용	필요시 적용
이미용비			이·미용 기본 제공
상급침실료		1인실(월 20만원)	필요시 적용

5 시설의 규모, 설비

1. 시설 설비

구분	침실	특수 침실	사무실 및 요양보호사 실	의료 및 간호사 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프로그 램실	식 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비상재해 대비실	세탁장 건조장
개소	9	1	1	1	1	2	1	1	3	1	1	1

1) 침실

- 가.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함
- 나.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임
- 다.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2명 이상임
- 라.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함
- 마.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
- 바. 채광 · 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
- 사.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둠
- 아.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했으며, 개폐가 가능함
- 자.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음(낮은 침대 주문제작)
- 차. 안전설비를 갖추

2) 세면장 및 목욕실

-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함
- 나.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함
- 다. 급탕을 자동 온도 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3)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 기구를 갖추

4)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 · 위생재료 또는 의료 기구를 갖추

5) 그 밖의 시설

가.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 등을 설치함

나.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함

다.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함

라.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함

2. 시설 위치 및 규모

1) 위치(주소지)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하강길 494

2) 시설규모

단층 노유자 시설

대지	2,314㎡	건축면적	835.1㎡	소유형태	자가
----	--------	------	--------	------	----

6 화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 상품명 : 삼성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 ☞ 보장기간 : 2024년 2월 18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
- ☞ 2025년 2월 18일부터 2026년 2월 18일까지(갱신)
- ☞ 불임 : [가입증명서 참고](#)

2. 화재보험 가입

- ☞ 상품명 : NH농협 일반화재보험
- ☞ 보장기간 : 2023년 7월 3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
- ☞ 불임 : [가입증명서 참고](#)

7 최종 장기요양 평가결과

2020.08.01. 설치로 인해 평가 받지 않음

8

급여제공(서비스) 종류

신체활동 지원	①옷갈아입기도움 ②세면도움 ③구강청결도움 ④신체청결도움 ⑤머리감기도움 ⑥몸단장 ⑦식사도움 ⑧체위변경 ⑨일어나 앉기 ⑩이동 ⑪화장실이용하기 ⑫약복용 ⑬관절움직임
인지관리 정서지원	①인지기능 ②정서지원
건강관리	①투약관리지도 ②약복용 및 인슐린 주사 ③관절구축예방간호 ④건강상태관찰 및 측정 ⑤건강 교육 및 상담 ⑥감염간호 ⑦의사진료지원 ⑧치매간호 ⑨의료기관 의뢰
간호처치	①호흡기간호(흡인간호,기관절개관관리,산소요법관리) ②욕창간호(예방,피부,상처간 호) ③경관영양(비위관교관관리,영양간호) ④통증간호 ⑤배설관리(도뇨관,방광,회음 부,요루간호) ⑥배설간호(관장,장루간호) ⑦투석간호 ⑧당뇨발관리 ⑨구강간호
기능회복훈련	①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②신체기능의훈련 ③기본동작훈련 ④일상생활동작훈련 ⑤인지기능프로그램 ⑥여가,정서프로그램 ⑦사회적응훈련 ⑧가족대상프로그램 ⑨물리치료 ⑩작업치료
기타	①응급서비스 ②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③환경관리 ④물품관리 ⑤세탁물관리

주간시간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6:00~09:30	기상 후 세면 및 의복관리, 아침식사 및 구강청결관리						
09:30~10:30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체조		목욕 급여 제공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체조	여가 프로그램 A	신체기능 프로그램 A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체조
10:30~11:30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	인지예방 프로그램 A or B		인지예방 프로그램 A or B	여가 프로그램 B	신체기능 프로그램 B	인지예방 프로그램 A or B
11:30~12:00	점심식사 및 구강청결관리						
12:00~14:00	개인시간 및 휴식						
14:00~15:00	수급자와 대화	TV시청	수급자와 대화	TV시청	몸단장	수급자와 대화	TV시청
15:00~16:00	TV시청	몸단장	TV시청	수급자와 대화	수급자와 대화	TV시청	수급자와 대화
16:00~17:30	저녁식사 및 구강청결관리						
17:30~18:00	여가시간 및 물리치료						
18:00~20:00	자유 시간						
20:00~06:00	취침						

<응급상황>

1. 의식확인
2. 기도 폐쇄 확인
3. 호흡확인
4. 맥박확인



경증

<의식, 의사소통, 움직임양호>



1339 응급처치 상담

*필요시 구급차 요청 포함



필요시 차량 또는 구급차 타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

중증

<의식, 의사소통, 움직임곤란>



주변도움 요청하고

119신고

*필요시 1339 연계해
적정 응급의료기관 안내



119 구급차 타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

응급상황이란: 의식의 소실, 호흡 맥박의 소실이나 부전, 과다출혈, 심한 전신 경련, 기도폐쇄, 개방성 골절, 낙상 등 생명의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